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9. 7.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22.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p> <p>1. ~ 6의3. (생략)</p> <p>7. <u>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u></p> <p>8.·9. (생략)</p> <p>10. <u>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u></p> <p>11. <u>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u></p> <p>12.·13. (생략)</p>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 ----- ----- ----- ----- ----- -----.</p> <p>1. ~ 6의3. (현행과 같음)</p> <p>7. 「<u>과학기술기본법</u>」 제11조에 따른 <u>국가연구개발사업</u>-----</p> <p>8.·9.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12.·13. (현행과 같음)</p>

<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5399